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3. 9. 8 선고 2023가단21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단체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1. 피고 C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2022. 7.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B 사이의 2022. 1. 25.자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D에게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1. 28. 접수 제9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2. 7. 4. 접수 제77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2022. 7.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외에는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이 자백하는 것으로 본다.

가. D은 2020. 3. 10. 원고와 보증금액 1억 7,000만 원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해 2020. 3. 27. E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D은 2022. 3.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여 원고가 2022. 9. 30.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원고의 D에 대한 2023. 1. 17. 기준 구상금채권 대위변제금 잔액 173,192,823원과 지연손해금 및 기타 비용 등 합계 177,668,437원이다.

다. D은 2022. 1. 25.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2022. 1. 28.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B는 2022. 7. 4. 피고 C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의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사이의 2022. 7.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고, 전득자를 상대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구하면 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소 중 수익자인 피고 B와 전득자인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와 D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D이 2022. 3.경 이후로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지체한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D이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비롯해 다른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2022. 9. 30. D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과 E은행, 원고 사이의 대출계약 및 신용보증약정은 제3자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2,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기망에 의한 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D이 여러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소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배우자인 D의 채무를 여러 차례 대신 변제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스스로 D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 대가로 D으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피고 C은 피고 B에게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5. 결론

피고 C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022. 7. 4.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효제

